

등록번호	교통행정과-28000
등록일자	2015.6.22.
결재일자	2015.6.2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교통행정팀장	교통행정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부구청장
최윤서	나정수	이준영	이명균	06/23 조인동
협 조				

2015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 계획



서 대 문 구
교통행정과

2015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 계획

2015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과근거 법규 변경내역 홍보 및 미사용신고 안내 등을 통해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개요

■ 관련 근거

-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
 -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
 -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9조
-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

■ 부과개요

- 부과대상 : 각 층 바닥면적(연면적)의 합이 1,000㎡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
- 대상기간 : 2014. 8. 1. ~ 2015. 7. 31.
- 부과기준일 : 2015. 7. 31.
- 납부의무자 :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
- 납부기간 : 2015. 10. 16. ~ 2015. 10. 31.

※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 실적

(단위 : 건, 천원)

부과년도	부과		징수		징수율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
2014년	732	1,568,652	705	1,546,102	98.6%

※ 2014년 징수교부금 교부액 : 506,831천원

II 중점추진사항

■ 과세자료 누락방지 및 미사용 시설물 감면안내

- 부과대상 시설물 과세자료 누락 방지
 - 부과대상기간 중 신·증축 시설물 및 누락 시설물 일제조사
 -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의 동일여부 확인
 - 면제대상 시설물의 다른 용도 사용여부 확인
- 미사용 시설물 감면안내
 -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신청서 제출안내

■ 사전홍보를 통한 민원해소 및 납부율 증대

- 고지서 발급 이전 구 소식지, 전광판,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홍보
-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및 미사용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문 우편발송
- 고지서 이면을 이용한 제도운영 사항 공지(이의신청 기한 등 명시)
- 고지서 발송과 동시에 민원상담 창구 운영

III 추진일정

일 정	추진내용	비고
2015. 7. 1. ~ 9. 30.	○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 전산입력 - 사용용도 조사결과 입력 및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	
2015. 8. 1. ~ 9. 30.	○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접수 - 시설물 미사용 신고내역 확인 후 전산입력	
2015. 9월중	○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- 경감을 결정 통지 : 경감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	
2015. 10. 1. ~ 10. 31.	○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안내 홍보 - 구 소식지, 전광판, 홈페이지 등	
2015. 10. 7. ~	○ 2015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- 납부기간 : 2015. 10. 16. ~ 10. 31.	
2015. 11. 1. ~ 12. 31.	○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독촉 및 체납관리	

IV

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세부내용

■ 부과징수대상

● 부과대상 시설물

-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,000㎡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

● 납부의무자

- 2015. 7. 31.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(시설물이 철거, 멸실된 경우는 최종소유자)
-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
 - ※ 소유면적이 160㎡ 미만은 비부과
- 부과대상기간 중 매매, 증여,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,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
 - ※ 일할계산 미신청 시 최종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까지 납부의무 승계

■ 부담금 부과기준

● 단위부담금

부과기준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3천㎡ 이하	700원	700원	700원	700원	700원	700원	700원
3천㎡ 초과 ~3만㎡ 이하	700원	800원	900원	1,000원	1,100원	1,200원	1,400원
3만㎡ 초과	800원	1,000원	1,200원	1,400원	1,600원	1,800원	2,000원

※ 2014년 적용부담금은 2014.8.1.~2015.7.31.까지 부과분으로 실제 부과징수는 2015년

※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㎡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함

● 부담금 산정방식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

- 면적을 3천㎡이하, 3천㎡초과~3만㎡이하, 3만㎡초과 3등급으로 나누어 단위부담금 차등 적용

적용 예시	2014년	2015년	2020년
면적 4만㎡ 적용시	$\{(3만㎡ \times 700원) + (1만㎡ \times 800원)\} \times$ 교통유발계수	$\{(3천㎡ \times 700원) + (2만7천㎡ \times 800원) + (1만㎡ \times 1,000원)\} \times$ 교통유발계수	$\{(3천㎡ \times 700원) + (2만7천㎡ \times 1,400원) + (1만㎡ \times 2,000원)\} \times$ 교통유발계수

※ 2014년 산정방식은 2014.8.1.~2015.7.31.까지 부과분으로 실제 부과징수는 2015년

● **교통유발계수**

- 시설물별 유발계수 : 공장 0.47 ~ 백화점 10.92
-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상상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용도의 유발계수 적용

■ **분할납부**

- **대 상** :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 이상 시설물
 -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 : 500만원 + 초과 금액
 - 납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 : 금액의 50/100이상 + 50/100이하
- **신 청** : 납기개시 후 5일 이내 신청서 제출
- **납부기한** : 2015. 11. 30.(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)

■ **면제대상 시설물**

- 주한 외국 정부기관,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, 주거용 건물(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)
- 주차장 및 차고, 정당 소유인 시설물, 종교시설, 교육용 시설물, 사회복지시설,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, 박물관 및 미술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 문화원 소유인 시설물, 도서관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, 보훈병원, 산업단지 안의 창고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, 국방·군사 시설,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,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, 물류터미널, 여객자동차터미널, 도시철도시설,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,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
- 송배전용변전소,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·배수펌프시설·상수도정수 시설 및 물재생시설
 - ※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가 면제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

■ 감면대상 시설물 및 처리절차

●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

- 감면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
- 신고내용을 확인,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 결정 후 결정액을 공제하여 납부고지

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따른 감면

- 전년도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경감신청서를 2015.8.10.까지 구청장에게 제출
-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교통수요관리 참여 프로그램 이행점검 결과를 근거로 경감심의위원회가 경감을 결정
- 경감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, 경감률을 적용한 결정액을 납부고지

V

행정사항

●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시설물 신고서 접수

- 접수내용 : 30일 이상 미사용한 건물의 미사용 면적 및 기간 등 증빙자료 접수

●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홍보 실시

- 홍보내용 : 부담금 납부 및 시설물 미사용 신고, 일할계산신청 등

●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적 제출(서울시 교통정책과) : 2015. 11. 13.까지